[베트남] 2018년 1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노이지사, 2018년 2월 13일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통관) 2018년 VKFTA 및 AKFTA 양허세율(수입세율) 변경

- * 베트남 정부 시행령 No. 149/2017/ND-CP (2017년 12월 26일 공표, 2018년 1월 1일 발효)
- * 베트남 정부 시행령 No. 157/2017/ND-CP (2017년 12월 27일 공표, 2018년 1월 1일 발효)
- 신년 수입세 변경내용 발표
- 베트남 세관총국은 한베FTA와 한아세안FTA를 통하여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상품 에 대한 양허세율(수입세율)을 공표함
- 한베FTA와 한아세안FTA의 2018년도 양허세율(수입세율)은 모두 2018년 1월 1일부로 발효됨
- 양허세율(수입세율)이 감소한 품목으로는 한베FTA는 해산물, 밀가루, 과자류이며, 한아세안FTA는 과자류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별첨 파일을 통하여 작년대비 양허세율(수입세율)의 비교가 가능함
 - * 별첨 1 : VKFTA(한베FTA) 2018년 베트남 양허세율(수입세율) 변경 한국식품
 - * 별첨 2 : AKFTA(한아세안FTA) 2018년 베트남 양허세율(수입세율) 변경 한국식품

* 출처

< VKFTA >

- 1. 2016-2018년 : Decree No. 131/2016/ND-CP
- * Lawsoft, 'Nghị định số 131/2016/NĐ-CP', 2016년 9월 1일.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131-2016-ND-CP-Bieu-thue-n hap-khau-uu-dai-Hiep-dinh-Thuong-mai-Tu-do-Viet-Nam-Han-Quoc-321973.aspx

- 2. 2018-2020년 : Decree No. 149/2017/ND-CP
- * Lawsoft, 'Nghị định số 149/2017/NĐ-CP', 2017년 12월 26일.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149-2017-ND-CP-Bieu-thue-n hap-khau-uu-dai-Hiep-dinh-Thuong-mai-Viet-Nam-Han-Quoc-362398.aspx
- * Vietnam Customs, 'Nghị định số 149/2017/NĐ-CP ngày 26/12/2017 ban hành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của Việt Nam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 Việt Nam Hàn Quốc giai đoạn 2018 2022', 2017년 12월 26일. 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ViewDetails.aspx?ID=10393

3. FTA 강국 Korea, '한-베트남 FTA 협정문'. http://fta.go.kr/main/situation/kfta/lov5/vn/2/

< AKFTA >

- 1. 2016-2018년 : Decree No. 130/2016/ND-CP
- * Lawsoft, 'Nghị định số 130/2016/NĐ-CP ', 2016년 9월 1일.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130-2016-ND-CP-Bieu-thue-n hap-khau-uu-dai-thuc-hien-Hiep-dinh-Thuong-mai-ASEAN-Han-Quoc-321972.aspx
- 2. 2018-2020년 : Decree No. 157/2017/ND-CP
- * Lawsoft, 'Nghị định số 157/2017/NĐ-CP', 2017년 12월 27일.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157-2017-ND-CP-Bieu-thue-n hap-khau-uu-dai-dac-biet-thuc-hien-Hiep-dinh-ASEAN-Han-Quoc-362397.aspx
- * Vietnam Customs, 'Nghị định số 157/2017/NĐ-CP ngày 27/12/2017 ban hành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của Việt Nam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hàng hóa Asean Hàn Quốc giai đoạn 2018 2022', 2017년 12월 27일. https://www.customs.gov.vn/Lists/VanBanPhapLuat/ViewDetails.aspx?ID=10392
- 3. FTA 강국 Korea, '한-아세안 FTA 협정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asean/2/

VKFTA(한베FTA) 2018년 베트남 양허세율(수입세율) 변경 한국식품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노이지사, 2018년 2월 13일

* 발효일 : 2018년 1월 1일

(단위 : %)

- -			# N		단위 : %)
류.호	소호		품명	201/년	2018년
02			육과 식용설육		
02.07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層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		
	11	00	의 것 저다하지 않아 오십시시회 것이나 내지한 것으로 한저한다.	25	2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2	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25	20
	13	00	절단육과 설육(曆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 다)	25	20
	14		절단육과 설육(層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날개	12.5	10
		20	넓적다리	12.5	10
			기타		
		99	기타	12.5	10
			- 칠면조의 것		
	25	00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03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0.00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		
03.03			외한다]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 또		
			는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		
			(Euthynnus(Katsuwonus) pelamis)][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		
			다]		
	42	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5	0
	43	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	5	0
	49	00	기타	5	0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		
			(Clupea pallasii)],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		
			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		
			(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		
			[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		
			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날쌔기[라키센		
			Japonicus)J, 신성이[드다거터스(Hachurus)동], 글쎄기[다기센 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및 황새치[자이피어스 글		
			르는 거디뚬(Kachycentron canaddin)] 및 황제시[시이피이크 글 래디어스(Xiphias gladius)][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57	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5	0
			- 그 밖의 어류[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1	_
			기타		
			· I=I		

			해수어	T	
	89	19	기타	5	0
03.04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		
03.04			며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또는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그 밖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		
	87	00	또는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	5	0
			(Euthynnus(Katsuwonus) pelamis)]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건선인 것 · 경쟁이다 정통인 것 · 신조인 것 · 감정이다 검구정인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		
03.07			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 • 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 • 세피올라(Sepiola)종]와 오징어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 • 로리고(Loligo)종 • 노토토다		
			루스(Nototodarus)종 • 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49		기타		
		10	냉동한 것	5	0
04			낙농품・조란(鳥卵)・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04.02			건으로 한정한다)		
			-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20	총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으로 포장한 것	5	0
07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버섯과 송로(松露)		
	59		기타		
		90	기타	5	0
09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0902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10		-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		
	10		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90	기타	10	0
11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1.01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00	10	- 밀가루	5	0
11.08		\sqcup	전분, 이눌린(inulin)		
			- 전분		
	12	00	옥수수로 만든 것	5	0
12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		
	<u> </u>		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9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90	기타	10	0
		10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0
		10	초콜릿 과자[둥글넓적한(tablet) 것이나 알약(pastilles)	10	_
	90	"	- 기타	1	
		90	기타	10	0
		10	초콜릿 과자	10	0
	32		속을 채우지 않은 것	1	
		90	기타	10	0
	<u> </u>	10	초콜릿 과자	10	0
	31	$\vdash \vdash$	속을 채운 것	1	
			-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 또는 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8.06		$\vdash \vdash$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vdash \vdash$	코코아와 그 조제품	+	
18		99		10	U
					0
		01		10	^
		20		10	0
	90	20		10	
	10	UU		10	0
17.04	10	00	한다)	10	
		$\vdash \vdash$			
17	30			+ -	
	90	43		5	0
		\vdash		+	
	90	$\vdash \vdash$		1	
15.17					
15.17					
		의 납 의 이 이 기 나 기를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의 - 기타 - 이미테이션 라드, 쇼트닝 이 43 쇼트닝 - 당류와 설탕과자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 기타			
15.06	00	00		5	0
15	_				
1 -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		
		90	기타	5	0
	21		식용에 적합한 것		
			-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		
12.12			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		
			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		
			로커스트콩(locust bean) ·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 · 사탕		

				맥아 추출물(extract),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		
				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		
19.01				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		
13.01				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		
				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 유아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0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것	5	0
		30		대두 가루의 것	8	4
	90			- 기타		
				기타(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상품으로 한정한다)		
		39		기타		
			10	의료용도 식품	5	0
				국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	
				기계		
				(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		
19.04				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10	0
				= (고문 기구 * 구분 글국 * 기원 기구는 제되어요 자근모리다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		
				[낚기 중입으로 모세한 것으로서 따로 분규되지 않는 것으로 한 정한다)		
				-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	+	
	10			국물에의 국물가이답을 00세기기의 휴에서 EC 도세 국표 품		
		90		기타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19.05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19.05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스위트 비스킷, 와플 및 웨이퍼		
	31			스위트 비스킷		
		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10	0
		20		코코아를 함유한 것	10	0
	32	00		와플과 웨이퍼	10	0
	90			- 기타	+	
	30	30		케이크	10	0
		80		그 밖의 바삭바삭한 짭짤한 맛의 식품	10	0
		90		기타	10	0
20		90			10	0
20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	1	
20.08				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		
				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 다)		
				더/ - 견과류·땅콩 및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		
				[다]		
	1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90		기타	10	0

21			각종의 조제식료품		
<u></u>		H		 	
			커피・차 또는 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 및 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차 또		
21.01			는 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		
Z I.U I			및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 • 에센		
			(essence) 및 농축물		
			- 커피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및 농축물과 이것	1	
			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품		
	11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및 농축물		
		10	인스턴트 커피	10	0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 및 거친		
21.03			가루와 조제한 겨자		
	90		- 기타		
			그 밖의 혼합조미료[벨라찬(belachan) 블라찬(blachan)을	1.0	
		40	포함한다]	10	0
		90	기타	10	0
21.05	00	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10	0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90		- 기타		
			음료를 만들거나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는 조제품	<u> </u>	
		53	인삼을 기본재료로 한 물품	5	0
		59	기타	5	0
		70	식이 보조제	5	0
			기타		
		91	그 밖의 화학품의 혼합물(식품가공에 사용하는 식료품이	5	0
			나 그 밖의 영양가 있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92	인삼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5	0
		98	그 밖의 향미가 첨가된 조제품	5	0
		99	기타	5	0
22			음료·알코올 및 식초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		
22.02			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		
			호의 과실 주스 또는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90		- 기타		
		30	그 밖의 비탄산수(희석 없이 그 상태로 식용에 적합한 것으	10	0
			로 한정한다)	10	
		90	기타	10	0
23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육 또는 설육(屑肉)・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23.01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펠릿		
			(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지박	 	
	20		- 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		
			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펠릿(pellet)	<u> </u>	

		10	어류의 것(단백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20	어류의 것(단백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90	기타	5	0
23.09			사료용 조제품		
	90		- 기타		
			완전사료		
		19	기타	5	0
		90	기타	5	0

^{*} 참고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 세관총국.

AKFTA(한아세안FTA) 베트남 양허세율(수입세율) 변경 한국식품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노이지사, 2018년 2월 13일

* 발효일 : 2018년 1월 1일

(단위 : %)

	2 육과 식용설육				(단위:%)
류.호	소호		품명	2017년	2018년
02			육과 식용설육		
02.07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層內)(신선한 것,		
02.07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칠면조의 것		
	25	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03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 외한다]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 (Euthynnus(Katsuwonus) pelamis)][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42	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5	0
	43	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	5	0
	49	00	기타	5	0
15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 의 납		
15.06	00	00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5	0
17			당류와 설탕과자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 한다)		
	10	00	-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10	0
	90		- 기타		
		20	백색 초콜릿	10	0
			기타		
		91	부드러운 것(젤라틴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0
		1	기타	10	0
18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 또는 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31		속을 채운 것		
		10	초콜릿 과자	10	0
		90	기타	10	0
	32		속을 채우지 않은 것		
		10	초콜릿 과자	10	0
		90	기타	10	0

	90		- 기타		
		10	초콜릿 과자[둥글넓적한(tablet) 것이나 알약(pastilles)	10	0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19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맥아 추출물(extract),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		
			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 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		
19.01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		
			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 유아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99	기타	5	0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		
19.02			(lasagne) • 뇨키(gnocchi) • 라비올리(ravioli) • 카넬로니		
			(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		
			다],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0		- 그 밖의 파스타		
		40	그 밖의 인스턴트 면류	10	0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19.04			(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 무(고요 가로 , 보스 안고 , 거치 가르는 제외하고 사전주리나고	10 (c) 10	
			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		
			지수 이 마르고 도세한 첫으로서 최고 분유되지 않는 첫으로 반 정한다)		
	10		-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		
	10		품		
		90	기타	10	0
			빵 • 파이 • 케이크 •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19.05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입귤·설팅웨이퍼(sealing water)·다이스페이퍼(rice pap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스위트 비스킷, 와플 및 웨이퍼		
	31		스위트 비스킷		
		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10	0
		20	코코아를 함유한 것	10	0
	32	00	와플과 웨이퍼	10	0
	90		- 기타		
		30	케이크	10	0
		80	그 밖의 바삭바삭한 짭짤한 맛의 식품	10	0
		90	기타	10	0
21			각종의 조제식료품		

		1	기교 + EL 미미(1	
			커피·차 또는 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04.04			및 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ㆍ차 또	10 C	
21.01			는 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		
			및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 • 에센		
			스(essence) 및 농축물		
			- 커피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및 농축물과 이것		
			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苦		
	11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및 농축물		
		10	인스턴트 커피	10	0
21.05	00	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10	0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90		- 기타		
	30		음료를 만들거나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 '' '' '' '' '' '' '' '' '' '' '' '' '		
		50	기타	5	0
21.06		39		3	U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5 0 동가공에 사용하는 식료품이 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90		- 기타		
		70	식이 보조제	5	0
			기타		
		01	그 밖의 화학품의 혼합물(식품가공에 사용하는 식료품이	Г	0
		91	나 그 밖의 영양가 있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U
		92	인삼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5	0
			그 밖의 향미가 첨가된 조제품	5	0
		1	기타	5	0
22			음료·알코올 및 식초		
2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		
22.02			글랑이다 그 낚의 삼미요 모든 왕미들 삼가인 물(당신구의 년년 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		
22.02					
	00		호의 과실 주스 또는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90		- 기타		
		30	그 밖의 비탄산수(희석 없이 그 상태로 식용에 적합한 것으	10	0
			로 한정한다)		
		90	기타	10	0
23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육 또는 설육(層肉)・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23.01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펠릿		
			(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지박		
	20		- 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		
	20		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펠릿(pellet)		
		10	어류의 것(단백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5	0
		10	것으로 한정한다)	,	
		20	어류의 것(단백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인	5	0
		20	것으로 한정한다)	,	
		90	기타	5	0
23.09			사료용 조제품		

	-		
90	기타	5	0

* 참고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 세관총국.